

라. 그 밖의 경력

경력구분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1) 「병역법」에 따른 예술·체육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 예비역으로 복무한 경력 (10할)	◦ 「병역법」에 따른 복무기관	◦ 「병역법」에 따른 예술·체육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 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한 경력(단, 의무복무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무 복무기간을 3년으로 산정)						
2) 변호사 또는 법무사 근무 경력(7할 이내)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 변호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갖추고 법률에 관한 사무에 근무한 경력						
3) 교원 노동조합 근무 경력 (7할 이내)	◦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원단체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	◦ 교원단체에서 근무한 경력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999.1.29. 공포, 1999.7.1. 시행) 제정 이후 노동조합에서 근무한 경력						
4)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근무 경력(7할 이내)	◦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소지한 자격과 동일한 분야의 학생교육을 전담하면서 근무한 경력						
5) 종교법인에서 교육활동 관련 직무에 종사한 경력 (6할 이내)	◦ 기독교 ◦ 천주교 ◦ 불교 ◦ 원불교	◦ 교회의 목사,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 전임전도사, 선교사로 근무한 경력 ◦ 성당의 신부, 수녀, 수사로 근무한 경력 ◦ 불교의 승려, 총무원임명 주지로 근무한 경력 ◦ 원불교의 교역자(교무, 도무, 덕무)로 근무한 경력 ※ 주일학교 등에서 학생부 선생님으로 활동한 것은 제외한다.						
6) 공공기관 등 근무 경력 (5할 이내)	◦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관으로 다음과 같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공사 및 공단 -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법인 ◦ 기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 「사립학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립학교 또는 학교법인 - 학교법인, 의료법인 등 법인체 병원 - 기타 교육부 산하(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오른쪽 표와 같다.	◦ 행정·경영·연구·기술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 교육부 관련 공공기관 및 산하(유관) 단체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0%;">공공기관 (준 정부기관)</td> <td>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한국장학재단</td> </tr> <tr> <td style="width: 30%;">기타 공공기관</td> <td>(과기원)고등과학원, 광주과학기술원, 국립대병원, 동북아역사재단,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평생교육 진흥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원자력통신기술원, 한국학중앙연구원,</td> </tr> <tr> <td style="width: 30%;">산하 (유관) 단체</td> <td>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과학기술인공제회, 과학기술인총연합회, 과학기술한림원, 대학교육 협의회, 연구개발인력교육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 방송공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직원 공제회, 한국직업능력개발원</td> </tr> </table>	공공기관 (준 정부기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한국장학재단	기타 공공기관	(과기원)고등과학원, 광주과학기술원, 국립대병원, 동북아역사재단,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평생교육 진흥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원자력통신기술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산하 (유관) 단체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과학기술인공제회, 과학기술인총연합회, 과학기술한림원, 대학교육 협의회, 연구개발인력교육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 방송공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직원 공제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공공기관 (준 정부기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한국장학재단							
기타 공공기관	(과기원)고등과학원, 광주과학기술원, 국립대병원, 동북아역사재단,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평생교육 진흥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원자력통신기술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산하 (유관) 단체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과학기술인공제회, 과학기술인총연합회, 과학기술한림원, 대학교육 협의회, 연구개발인력교육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 방송공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직원 공제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